

4. 방화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의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로부터 각종 재해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1.7.1. 자구 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조직) 본교 방화관리의 총책임자는 총장이며, 실질적 방화관리업무를 담당할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4조(방화관리자 자격) ①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위험물 취급관리자는 위험물 취급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선임한다.

④ 각 건물별 방화책임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한다.

제5조(방화관리자의 업무) ①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진압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, 정비와 화기의 사용,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③ 방화관리자는 년 1회 소방계획에 의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방화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, 운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건물별 방화책임자의 업무) 건물별 방화책임자는 사용건물내의 화재예방 및 화기단속을 하고 소방장비 등의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방화관리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당직근무자의 임무) 당직근무자는 당직기간동안 방화관리자 및 방화책임자의 의무를 지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.

제8조(방화관리 담당부서의 업무) 방화관리 담당부서는 방화관리자의 주도하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.

제9조(교육 및 훈련) ①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년 1회 실시하는 종합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.

② 소방교육은 년 1회를 의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.

③ 방화관리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종합소방훈련을 지휘 감독한다.

④ 자위소방대원은 방화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소방훈련에 임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위소방대 편성) 자위소방대는 본교의 모든 교직원이 모두 편성되어 운영되도록 한다.

제11조(소방훈련 검토) 방화관리자는 교육 및 훈련 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기록하여 보완, 개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자체점검) 방화관리자는 자체점검기록부를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 ① 위험물 취급장소 및 화기 취급소 등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물의 관계설계도면 등을 관리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재무회계규정에서 독립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